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03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61922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의 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출장소장
변 론 종 결	2016. 7. 20.
판 결 선 고	2016. 9.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15,072,360원, 지방교육세 2,920,660원, 농특세 3,153,5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03

가. B 외 8인은 [redacted]시 C 대 30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0. 6. 7. 연면적을 335.4㎡(지1층 단독주택 87.06㎡ + 1층 단독주택 87.26㎡ + 1층 주차장 38.02㎡ + 2층 단독주택 104.42㎡ + 3층 단독주택 18.64㎡, 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란에는 '옥탑 1층 단독주택 15.44㎡'도 등재되어 있으나 건축법령에 따라 연면적 산정에서는 제외되었다)로 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0. 6.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1/9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B은 2010. 7. 15. 이 사건 건물 중 나머지 공유자들의 8/9 지분에 관하여도 2010. 7. 13.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2. 4. 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redacted]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대금 725,560,000원에 낙찰받아 2012. 12. 28.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법상 그 연면적이 1층 주차장 부분(38.02㎡)의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312.82㎡(지1층 단독주택 87.06㎡ + 1층 단독주택 87.26㎡ + 2층 단독주택 104.42㎡ + 3층 단독주택 18.64㎡ + 옥탑 1층 단독주택 15.44㎡)로서 고급주택의 분류기준인 연면적 331㎡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5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2013. 1. 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표준세율(1%)을 적용하여, 2013. 2. 2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7,255,600원, 지방교육세 725,560원, 농어촌특별세 4,716,140원 합계 12,697,3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경기도로부터 감사를 받던 중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이 사건 건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03

에 대한 감정평가서와 매각대금완납증명원에 '제시외 건물 다락 37.2㎡'가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2015. 3. 30.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옥탑에 건축물대장 및 도면에 등재되지 아니한 방실 2개 면적 합계 37.2㎡(이하 '이 사건 방실 '이라 한다)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방실도 주택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건물의 지방세법상 연면적이 1층 주차장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350.02㎡(지1층 단독주택 87.06㎡ + 1층 단독주택 87.26㎡ + 2층 단독주택 104.42㎡ + 3층 단독주택 18.64㎡ + 옥탑 1층 단독주택 15.44㎡ + 이 사건 방실 37.2㎡)로서 연면적 331㎡를 초과하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5. 2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725,560,000원에 구 지방세법 제13조 5항 소정의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5,072,360원, 지방교육세 2,920,660원, 농특세 3,153,500원 합계 121,146,5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종전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종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redacted]도지사는 2015. 10. 28. 종전 부과처분에 가산세 산출근거를 누락하는 등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2015. 12. 1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각각의 본세와 가산세별 산출내역을 제시하여 취득세 115,072,36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5,962,32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9,298,440원 포함), 지방교육세 2,920,66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17,66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26,320원 포함), 농특세 3,153,5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614,040원 포함) 합계 121,146,5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03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5, 6, 8 내지 10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은 합계 350.84㎡(지1층 단독주택 87.06㎡ + 1층 단독주택 87.26㎡ + 1층 주차장 38.02㎡ + 2층 단독주택 104.42㎡ + 3층 단독주택 18.64㎡ + 옥탑 1층 단독주택 15.44㎡)로서, 위 연면적에서 1층 주차장 면적 38.02㎡를 제외하면 312.82㎡에 불과하므로 고급주택의 기준 연면적 331㎡에 미치지 못한다. 이 사건 건물이 고급주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지방교육세 본세 부분은 그 과세표준의 산정근거가 불분명하여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점을 알지 못했고, 공부상 기재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도 2년이 넘도록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이 고급주택임을 전제로 한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나) 피고는 취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 제1항에 따라 1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20%의 세율을 적용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03

4) 피고가 아무런 이유 없이 2년이 넘게 이 사건 처분을 지체하여 원고로 하여금 과도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건물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의 위임에 의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는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 원을 초과하고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의 하나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연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령상 아무런 정함이 없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은 취득 당시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 주거용으로 쓰여질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면 되고, 설령 건축관계 법령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서 그 적용에 관한 명문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이지, 건축관계 법령을 바로 그대로 적용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03

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890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의 1.에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은 1층 주차장 부분을 제외하고 지1층 87.06㎡, 1층 87.26㎡, 2층 104.42㎡, 3층 18.64㎡, 옥탑 52.64㎡(15.44㎡ + 이 사건 방실 37.2㎡)로 되어 있었던 사실, ②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방실은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와 매각대금완납증명원에는 이 사건 방실이 제시외 건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방실은 이 사건 건물의 내부 계단을 통해 출입이 가능하고, 벽체와 천정(경사지붕)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내부에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④ 피고가 이 사건 건물 현황을 확인할 당시 이 사건 방실은 내부에 소파, 탁자, 책장 등이 놓인 상태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방실은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부분과 일체를 이루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 주거용으로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고급주택으로서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을 산정함에는 이 사건 방실 부분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은 350.02㎡(지1층 단독주택 87.06㎡ + 1층 단독주택 87.26㎡ + 2층 단독주택 104.42㎡ + 3층 단독주택 18.64㎡ + 옥탑 1층 단독주택 15.44㎡ + 이 사건 방실 37.2㎡)에 이르러 고급주택 판단기준 연면적 331㎡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의 산정근거

이 사건 처분 중 지방교육세 본세의 과세표준은 구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03

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취득 당시의 가액, 같은 법 제10조 제1항) 725,560,000원에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호 소정의 유상취득세율 1천분의 40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인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인 14,511,200원(725,560,000원 × 20/1,000)이 되고, 이는 피고가 산정한 과세표준(갑 제12호증의3 취득세 납세고지서 산출근거 중 지방교육세 산출내역 부분)과 동일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가)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 부과되는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로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수 있는 사정 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1)의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방실 부분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에 등재되지는 않았으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와 매각대금완납증명원에는 이 사건 방실이 제시외 건물로 표시되어 있었고, 당시 이 사건 방실은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부분과 일체를 이루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 주거용으로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03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었는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방실의 존재 및 현황을 알았거나 적어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이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공부상 기재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정은 법령의 부지 내지 착오에 불과한 점,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조사·확인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 조세채무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피고가 원고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신고 후의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한 점(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은 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서 신설된 규정으로,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법 시행(2013. 1. 1.) 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그리고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4호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와 같은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 과세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2012. 12. 28. 이 사건 건물의 낙찰대금을 완납한 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03

실은 앞의 1.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따른 원고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2012. 12. 28.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개정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고, 피고가 구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호 및 구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족세액[79,811,600원 = 과세표준 725,560,000원 × 12%(중과세율) - 7,255,600원(기납부 취득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15,962,320원을 취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조사·확인하고 이에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점, 원고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여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이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함으로써 미납부일수 증가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는 제도(구 지방세기본법 제50조)가 마련되어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부당히 지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복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03

판사 김선영

판사 홍영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03

별지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03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단서 생략)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1. 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03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50조(수정신고)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제53조(가산세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부칙 <제11616호,2013.1.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2-0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가산세율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